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2822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 학교 부지 등에 조성되는 학교숲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며,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함.

2.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청 명시(안 제2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수정(안 제3조)
-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외(안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학교숲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3조제1항제3호)
- 조문 체계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4호나목 중 “(공원)”을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 제5조 중 “도시숲 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법 제6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9호 중 “드는”을 “소요되는”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조성 및 관리”를 각각 “조성·관리”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로, “경우 다른”을 “경우에는 다른”으로 한다.

안 제30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들”을 “시장은 시민”으로, “경우,”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u>도시숲등의</u>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p> | <p style="text-align: center;">----- <u>도시숲 등의</u>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 <p>제2조(정의) ----- -----.</p> |
| <p>1. ~ 3. (생략)</p> | <p>1. ~ 3. (제정안과 같음)</p> |
| <p>4. “관리청”이란 ‘도시숲·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각 목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p> | <p>4. ----- ----- -----.</p> |
| <p>가. (생략)</p> | <p>가. (제정안과 같음)</p> |
| <p>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사무구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장</p> | <p>나. -----(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 례」 제31조----- ----- <u>자치</u> <u>구청장</u></p> |
| <p>다. (생략)</p> | <p>다. (제정안과 같음)</p> |
|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p> | <p>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p> |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드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자원 조달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

---- 도시숲등-----

-----.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 법 제6조제1항

-----.

② -----

-----.

1. ~ 8. (제정안과 같음)
9. ----- 소요
되는 -----

10. (생략)

③ ~ ④ (생략)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 및 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생략)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10. (제정안과 같음)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1. (제정안과 같음)

2. ----- 조성
· 관리 -----

3. ----- 조성 · 관리-----

4.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① -----

----- 사람에 -----

-----.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
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
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생략)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
항 <단서 신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

----- 사람이 -----

-----.

② -----
-- 사람이 -----

-----.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① -----

-----.

1. (제정안과 같음)
2. ----- 사
항.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
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제
외한다.

<삭 제>

른 학교 내·외의 학교 부지 등에
구성되는 학교숲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② 제1항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경우 다른 위
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자격을 갖
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 이외의 자가 도시
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관
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3. ~ 4. (제정안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

----- 경우에는 다
른 -----

-----.

제3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사람이 --

-----.

③ 시장은 시민-----
-----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

④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도시숲·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각 목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가로수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리청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서 정한 사무구분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다. 그 밖에 도시숲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자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다음 각 호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측정·평가 결과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조(국내 및 국제협력) 시장은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 조성·관리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3. 도시숲등 조성·관리 사업으로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 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의 재상정)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결·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도시숲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했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2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와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5.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 이외의 사람이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가로수 관리 등에 주민참여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를 따른다.

제31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수목과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2조(준용) 보칙 및 벌칙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시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제11조 관련)

| 부 과 대 상 | 부과금액 산출 | 비고 |
|---|---|----|
| 1.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이식·제거목, 교통사고 등에 따른 도시숲등 훼손 |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 2. 50% 이상 고유 수형 상실 등으로 수목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 3. 10% 이상~5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해당 수목가 격의 90~50% | |

※ 비용의 산출은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목가격은 연도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